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994
----------	-------

발의연월일 : 2026. 2. 24.

발 의 자 : 오세희 · 이주희 · 박희승
이용우 · 어기구 · 박홍배
박지원 · 전진숙 · 이훈기
장철민 · 윤종균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소비자 또는 화훼산업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화훼와 관련된 지식·기술 등을 보급·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화훼 사용 확대에 따라 일부 독성이 있는 화훼가 유통되고 있지만 현행법령에는 이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 등이 미비하고, 소비자에 대한 안내도 미흡하여 특히 실내에 거주하는 사람과 반려동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람과 동물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독성 화훼의 종류 및 유형 목록을 작성해 고시하고 관련 교육을 이수한 화훼산업종사자의 화원을 우수화원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며, 화훼판

매자는 소비자에게 독성 화훼의 종류 및 취급 주의사항 등을 안내하도록 함으로써 화훼의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화훼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 제13조 및 제16조의2 신설).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화원을”을 “화원 및 제13조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화훼산업종사자가 운영하는 화원을”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전수하기”를 “전수하고 독성이 있는 화훼의 취급·관리를”로 한다.

제4장에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독성이 있는 화훼의 안전관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화훼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람 및 동물에게 위해(危害)를 줄 수 있는 독성이 있는 화훼의 종류·유형과 취급 주의사항 등이 포함된 목록을 작성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화훼를 판매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화훼를 판매하는 경우 해당 화훼의 종류, 취급 주의사항 등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독성이 있는 화훼의 목록 작성과 소비자 안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우수회원의 육성) ① 농림 축산식품부장관은 화훼의 품질 향상과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품질관리에 필요한 설 비, 전문인력 등을 갖춘 <u>화원을</u> 우수회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12조(우수회원의 육성) ① ---- ----- ----- ----- ----- <u>회원</u> <u>및 제13조에 따른 교육훈련을</u> <u>이수한 화훼산업종사자가 운영</u> <u>하는 화원을</u>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교육훈련) ① 국가 및 지 방자치단체는 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문화 진흥을 위하여 소 비자 또는 화훼산업종사자 등 을 대상으로 화훼와 관련된 지 식·기술 등을 보급· <u>전수하기</u> 위한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위 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교육훈련) ① ----- ----- ----- ----- ----- ----- <u>전수하고 독성</u> <u>이 있는 화훼의 취급·관리를</u>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u><신 설></u>	<u>제16조의2(독성이 있는 화훼의</u> <u>안전관리 등) ① 농림축산식품</u> <u>부장관은 화훼의 안전하고 채</u>

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람 및 동물에게 위해(危害)를 줄 수 있는 독성이 있는 화훼의 종류·유형과 취급 주의사항 등이 포함된 목록을 작성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화훼를 판매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화훼를 판매하는 경우 해당 화훼의 종류, 취급 주의사항 등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독성이 있는 화훼의 목록 작성과 소비자 안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